

제364회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11월12일(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외교부 소관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
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7.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8.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촉구 결의안
10.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11.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
12.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거래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제3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 지지 결의안

상정된 안건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3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 가. 외교부 소관
-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김해영·김경협·강훈식·변재일·이찬열·권철승·윤후덕·강병원·안호영·고용진·오영훈·임종성 의원 발의) 10
- 4.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김영진·유동수·전재수·위성곤·김병기·박찬대·이학영·김영호·정세균·박정·김해영·박주민·이원욱·조승래·윤후덕·이인영·박홍근·이진복·표창원·송기현·안호영·이상현·윤일규·임종성·이규희·심재권·유성엽·하태경·조배숙·박광온·김경협·홍영표·안민석 의원 발의) 10
- 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 10
- 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10
- 7.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10
- 8.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권철승·박정·김병욱·고용진·신창현·진선미·김해영·김병기·위성곤·정재호 의원 발의) 10
- 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촉구 결의안(금태섭·원혜영·서영교·김부겸·고용진·정춘숙·표창원·박용진·이규희·이철희·박주민·김종민·윤관석·이인영·강병원·기동민·우원식·권미혁·정세균·박병석·이춘석·박찬대·진선미·이정미·이학영·안호영·정성호·한정애·박지원·백재현·홍익표·남인순 의원 발의) 10
- 10.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천정배·박주현·조배숙·박지원·윤영일·정인화·최경환(평)·장정숙·김종희·송영길 의원 발의) 10
- 11.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박지원·유성엽·박선숙·윤영일·김종희·전혜숙·김광수·장병완·장정숙 의원 발의) 10
- 12.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김두관·김철민·고용진·심재권·임종성·설훈·윤후덕·남인순·백재현·김경진·강병원·김영진·송갑석·추미애·이재정·이용호·박주현·신경민·원혜영·이학영·정동영·이철희·김상희·이용득·우상호·이규희·박주민·송기현·박경미·박지원·조배숙·손혜원·이종걸·이석현·박광온·정세균·김병욱·오영훈·신창현·박용진·서영교·김진표·강창일·김정우·김한정 의원 발의) 10
- 1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원유철·장병완·송옥주·이찬열·이용주·박주현·김중로·김종희·정동영 의원 발의) 10
- 14.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 15.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신경민·정재호·이훈·박정·안규백·김병관·권철승·박홍근·우원식·박광온·인재근·안민석·유은혜·유동수·이수혁·심재권 의원 발의) 10
-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정재호·이훈·박정·안규

- 백·김병관·권칠승·박홍근·우원식·인재근·박광온·안민석·유은혜·유동수·이수혁·심재권 의원 발의) 10
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김규환·이종명·김재원·유기준·정갑윤·권성동·김선동·김용태·김성원·김석기·송희경 의원 발의) 10
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강훈식·전현희·안호영·변재일·조정식·기동민·김중희·박재호·강병원·김병욱·이용호·박홍근·윤후덕 의원 발의) 11
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남인순·김병기·원혜영·박찬대·박재호·백혜련·금태섭·윤후덕·김현권·기동민·김철민 의원 발의) 11
2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신경민·정재호·이훈·박정·안규백·김병관·권칠승·박홍근·우원식·박광온·인재근·안민석·김병기·이수혁·심재권 의원 발의) 11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송갑석·박찬대·임종성·이규희·백재현·윤후덕·인재근·송옥주·금태섭·안호영·유동수 의원 발의) 11
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김혜영·김경협·강훈식·변재일·이찬열·권칠승·윤후덕·강병원·안호영·고용진·오영훈 의원 발의) 11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윤후덕·황주홍·권칠승·김수민·김삼화·오세정·신용현·이동섭·하태경·정인화 의원 발의) 11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김선동·정유섭·박명재·추경호·이은권·이종명·홍문표·정태욱·이명수·김광림·김종석 의원 발의) 11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이찬열·김수민·유민봉·이학재·김삼화·정병국·권은희·오신환·채이배 의원 발의) 11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2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정재호·이훈·박정·안규백·김병관·권칠승·박홍근·우원식·인재근·박광온·안민석·유은혜·이수혁·심재권 의원 발의) 11
2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김철민·고용진·장정숙·백혜련·진선미·김성수·신창현·김영호·박범계·원혜영·이수혁 의원 발의) 11
29. 거래말근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윤관석·변재일·신창현·송갑석·우상호·안호영·강훈식·권칠승·박병석·김경협 의원 발의) 11
3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이인영·송갑석·서형수·기동민·원혜영·신창현·송옥주·전현희·노응래 의원 발의) 11
31. 제3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 지지 결의안(박선숙·윤영일·권칠승·장정숙·김현권·박지원·박용진·최경환(평)·심상정·인재근·김광수 의원 발의) 11

(15시10분 개의)

○위원장 강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예결소위 위원님들께서 결론 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소관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에 협의된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예결소위에서

의결된 외교부·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외교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우선 처리코자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조정할 여지는 없는지 예결특위 심사 전까지 예결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인 협의 노력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외교부 소관

(15시12분)

○위원장 **강석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수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수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이수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9일과 12일 이틀 동안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 시에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토대로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들에 대해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46억 원,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 2500만 원, 재외동포재단 출연-홍보문화사업 5000만 원 등 총 4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46억 9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은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문제 대처 1억 2000만 원,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3억 원, 아세안 및 남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5억 원, 공공외교 역량강화 6억 1000만 원, 재외동포재단 출연-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19억 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200억 원 등 총 26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330억 5150만 원을 증액·신설하였고 아세안 및 남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한-아세안 의회 교류를 위한 사업 예산 4100만 원을 국회로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283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의 신남방외교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신남방외교 지원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에 대비하여 신남방외교 정책을 조속히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청구 사건의 피해자 중심 원칙을 확인하고 관련 논의에 피해자 등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부대의견 6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소관 국제교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협력강화 세부사업에 대하여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은 한국학 기반확대 5억 원, 글로벌 인적교류 15억 원, 정책공공외교 강화 17억 1800만 원, 글로벌 협력강화 7억 3000만 원 등 총 4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합계 44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43억 6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소관 국제질병퇴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일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감액은 통일 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에 1억 2000만 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은 통일정책대국민소통 활성화 3억 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추진협의회 지원 2억 5000만 원, 해외 북한인권전문가 초청 1억 5000만 원, 북한인권재단 임차료 미납금 5억 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4600만 원,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 54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지원 1억 7700만 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경상비 3억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24억 원, 신경제지도구상 추진 기반구축 1억 7200만 원,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10억 원, 사이버 안전센터 운영 15억 5600만 원 등 12건의 사업에 걸쳐 합계 69억 500만 원을 증액·신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67억 8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는 통일부 및 외교부의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부부처 간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견 등 총 9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안은 자문위원 역량강화 4억 원, 청소년통일공감사업 7억 500만 원, 해외통일특화사업 5억 2000만 원, 평화통일원탁회의사업 2억 원 등 총 4건의 사업에 걸쳐 합계 18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 중 평화통일원탁회의사업에 대해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원탁회의사업을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여론수렴 및 사회적 합의 형성 관련 유사 사업과 비교·평가하여 사업 차별화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사업대상 확대, 토론방식 변화, 프로그램 다양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수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나 이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손 드는……

○**정양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강석호** 정양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정양석 위원** 이번에 우리 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심의를 하지

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협력기금은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에도 그 실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예산의 총액과 시기를 특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또 총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내년 예산만 제출하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심의를 할 수가 없었다, 심의권이 훼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는 조속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도 비용추계에 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비용추계가 있어야 비로소 내년 예산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고 또 비준동의안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협력기금이 그동안에 투명하지 않게 심의되었고 또 비공개리에 집행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역시 우리 위원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통일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또 남북협상에 있어서,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있어서도 과거 정부와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일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거스르고 또 비용추계가 제출되지 않아 남북협력기금이 심의되지 못했던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비용추계가 제출되어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비준동의안은 다음에 있을 법안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될 예정인데 비용추계가 없이는 진전이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혁 위원** 저……

○**위원장 강석호** 이수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혁 위원** 조금 전에 정양석 간사님께서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조차 전개하지 못하고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당 간사로서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남북 간의 관계 발전, 혹시 또 가져올 그 결과에 대해서 진취적이고 낙관적 견해를 가지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제 역량 부족으로 진행이 있지

를 못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러움을 표합니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서도 법안을 상정해서 내주부터 토의를 할 텐데 여당 측의 입장은 견고하고, 조속히 심사해서 동의안을 처리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계속해서 야당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가면서 이 문제도 법안심사 때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통일부장관님, 비용추계를 조속하게 제출을 해 달라, 그래야만이 법안심사의 이런 부분도 속도를 낼 수 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해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북측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비용추계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그렇게 저희가 무리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내게 되면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저희가 검토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 자료 제출을 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정부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또 저희 정부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석호** 잘 알겠습니다.

이게 비용추계 없이는 여러 가지 법안심사는 참 어렵다는 말씀과 또 계속 검토 중에 있다, 현실적으로 구체적 상황이 북측 간에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실정이다 이런 내용을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들끼리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잘……

○**송영길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조금……

○**위원장 강석호** 잠깐만,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협의를 좀…… 아직 기금 문제도 그렇고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계속적으로 협의 노력도 기울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혁 위원** 야당 측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위원장 강석호** 송영길 위원님.

○**송영길 위원** 정양석 위원님께서 집권 여당이 되어서 대북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시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대북관계라는 게 상당히 예측 불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을 일단 포괄적으로 위임해서 그때 그때 상황 진전이 있다라고 국회에 보고하고 처리하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불필요한, 한미 간도 그렇고 남북 간도 그렇고 이게 오해와 마찰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고도의 어떤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양석 위원** 저도 한 말씀 짧게 드릴까요?

○**위원장 강석호** 예, 정양석 위원님.

○**정양석 위원** 송영길 위원님의 그런 정치적 견해, 저희들이 또 입장을 바꿔 놓고 보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지만 아까도 다 들으신 바와 같이 통일부장관의 답변이 정치적 고려를 감안한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가 아니고 ‘안 됩니다’ 이겁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어떻게 이게……

정말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전체회의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같이 만들자. 그것은 여러 변수가 있다. 어차피 우리가, 여야가 통일부와 함께 같이 만들면 같이 만든 추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비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제안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그러나 오늘 목소리 낮춰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들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손을 들)

○**위원장 강석호** 유기준 위원님.

○**유기준 위원** 저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일본과의 외교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양국 간에 현안 일이 있는 것만 하더라도 8개 현 농수산물 수입 금지 때문에 WTO에 제소되어 있다가 우리가 패소해서 지금 항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한일

어업협정의 공동어로구역 부분의 공동조업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최근에 강제징용 판결로 인해 가지고 일본에서 상당히 이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또 이전에 강제징용 노동자상 같은 설치를 해서 그에 대해서 일본이 상당히 항의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일본에서는 한국이 조선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WTO 보조금 조항에 위반된다 그래서 일단 한국에 먼저 협상을 요구했고 만일에 이게 결렬되면 WTO에 제소하려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에 어느 때보다도 이런 외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어쨌든 이게 더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이 상황이 계속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경제라든지 아니면 양국의 우호관계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이어서 심사 결과 6페이지에 보면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 지향은 10억 2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대일외교가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하여 1억 증액, 그다음에 21세기 한일 신시대 복합 네트워크 구축 11억 9400만 원은 대일외교가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해서 1억 원 증액 필요 이렇게 해서 증액은 한다 하더라도 대일외교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해서 이게 만일에 증액이 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것 말고 다른 데에 쓰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특정해서 한일 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도 하고 어떻게 하면 외교적으로 우리가 잘 대응도 하고 또 일본과 협상을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런 것을 시행하는 게 오히려 더 급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정리하고 또 금액도 이것보다는 더, 제 생각으로는 한 5억 이상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것 말고도 7번에도 보면 동북아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예산 증액 1억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내용을 그 안에 넣어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이것도 전체적인 큰 틀의 연구를 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이용 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 취지에 십분 공감을 해서 민감한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대일관계 관리·유지 또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외교부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두 번째,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1억 2000만 원 증액해 주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지만 이 부분도 동북아 다자협력을 제도화한다는 취지의 예산이고 여기에 증액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게 십분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WTO에 우리가 제소되어서 1심에서 패소를 한 게 1건 있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농수산물 수입 금지 때문에.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유기준 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조선업 때문에 또다시 WTO에 제소된다면 벌써 한일 간에 이런 문제가 2건이 되는 셈이고, 더욱이 이런 이유로 해서 또 다른 문제에까지 일본이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현재도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두면……

지난번에는 일본에 부산 총영사가 소환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외교부가 좀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님, 참고로 그 WTO 제소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WTO에 항소를 한 상황이고요. 조선업계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이번에 재판 판결 있기 한참 전, 작년부터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와서 저희가 대화 상태에 들어간 것이고 대화가 결렬되면 WTO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WTO 분쟁은 우방국들 간에도 흔히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WTO 절차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장관이 조금 단일한 인식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전에

그런 어떻게 보면 컴플레인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식으로 11월 5일 날 한국과의 협상을 먼저 요구했고 이게 결렬되면 바로 WTO에 제소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현재의 아주 심각한 상황을 잘 좀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정병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석호 그러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한 분이 시간을 정하지 않으니까 늘어지는데……

○정병국 위원 시간을 정해 주세요.

○위원장 강석호 한 7분 드리지요.

○정병국 위원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해서 증액을 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인력은 그래도 42명을 증원했는데 지금 처우개선비가 2억 증액이 됐어요. 우리가 행정직원 보수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00억을 증액시켰잖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이 수준이 지금 과연 되나요? 2억만 증액을 시키면 42명에 대해서, 이거 외무부에서 한번 파악을 해 본 거예요? 42명 증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직원 보수 현실화하기 위해서 200억 증액을 했잖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병국 위원 그 퍼센티지가 되느냐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두 가지 사안인 것 같은데, 첫 번째 42명……

○정병국 위원 아니, 42명 증원을 하는 것은 올라갔잖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건 24억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 처우개선비가 2억을 별도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포함해서 24억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병국 위원 그 2억 가지고, 전체 재외공관 행정직원 보수 현실화하는 데 200억 증액을 했잖아요. 그 비율이 맞느냐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무슨 말씀인지……

○정병국 위원 실무자가 이거 맞춰서 해 본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 맞춰서 한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병국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되 외교부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각각의 소관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구 및 계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국회법 제84조 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동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동의 여부에 대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장님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외교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외교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외교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오늘 의결해 주신 외교부 예산안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의결된 내용들이 내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이수혁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통일부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유념하여 기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국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통일부는 판문점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다음 법안소위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오늘 의결해 주신 통일부 소관 예산안이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성 민주평통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소상하게 심사하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제안과 지적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제시해 주신 사안들을 내년도 업무 수행과 예산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의결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 말씀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낭비적 요인 없이 당초의 목적과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하시겠습니다마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오늘 의결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안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2건의 PKO 파병연장 동의안의 경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20일이 경과되지 않아 상정을 위해서는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사전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동의안들에 대해서는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에 협의한 대로 오늘 상정해서 심사 절차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무위원 불출석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되는 신규 안건 중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과 관련하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하지만 캐나다 상원의장과의 면담이 미리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대리 출석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김해영·김경협·강훈식·변재일·이찬열·권철승·윤후덕·강병원·안호영·고용진·오영훈·임종성 의원 발의)
4.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김영진·유동수·전재수·위성곤·김병기·박찬대·이학영·김영호·정세균·박정·김해영·박주민·이원욱·조승래·윤후덕·이인영·박홍근·이진복·표창원·송기현·안호영·이상헌·윤일규·임종성·이규희·심재권·유성엽·하태경·조배숙·박광온·김경협·홍영표·안민석 의원 발의)
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
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7.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비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8.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권철승·박정·김병욱·고용진·신창현·진선미·김해영·김병기·위성곤·정재호 의원 발의)
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촉구 결의안(금태섭·원혜영·서영교·김부겸·고용진·정춘숙·표창원·박용진·이규희·이철희·박주민·김종민·

- 윤관석·이인영·강병원·기동민·우원식·권미혁·정세균·박병석·이춘석·박찬대·진선미·이정미·이학영·안호영·정성호·한정애·박지원·백재현·홍익표·남인순 의원 발의)
10.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천정배·박주현·조배숙·박지원·윤영일·정인화·최경환(평)·장정숙·김종희·송영길 의원 발의)
 11.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박지원·유성엽·박선숙·윤영일·김종희·전혜숙·김광수·장병완·장정숙 의원 발의)
 12.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김두관·김철민·고용진·심재권·임종성·설훈·윤후덕·남인순·백재현·김경진·강병원·김영진·송갑석·추미애·이재정·이용호·박주현·신경민·원혜영·이학영·정동영·이철희·김상희·이용득·우상호·이규희·박주민·송기현·박경미·박지원·조배숙·손혜원·이종걸·이석현·박광온·정세균·김병욱·오영훈·신창현·박용진·서영교·김진표·강창일·김정우·김한정 의원 발의)
 1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원유철·장병완·송옥주·이찬열·이용주·박주현·김중로·김종희·정동영 의원 발의)
 14.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신경민·정재호·이훈·박정·안규백·김병관·권철승·박홍근·우원식·박광온·인재근·안민석·유은혜·유동수·이수혁·심재권 의원 발의)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정재호·이훈·박정·안규백·김병관·권철승·박홍근·우원식·인재근·박광온·안민석·유은혜·유동수·이수혁·심재권 의원 발의)
 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김규환·이종명·김재원·유기준·정갑윤·권성동·김선동·김용태·김성원·김석기·송희경 의원 발의)

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강훈식·전현희·안호영·변재일·조정식·기동민·김종회·박재호·강병원·김병욱·이용호·박홍근·윤후덕 의원 발의)

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남인순·김병기·원혜영·박찬대·박재호·백혜련·금태섭·윤후덕·김현권·기동민·김철민 의원 발의)

2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신경민·정재호·이훈·박정·안규백·김병관·권칠승·박홍근·우원식·박광온·인재근·안민석·김병기·이수혁·심재권 의원 발의)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송갑석·박찬대·임종성·이규희·백재현·윤후덕·인재근·송옥주·금태섭·안호영·유동수 의원 발의)

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김해영·김경협·강훈식·변재일·이찬열·권칠승·윤후덕·강병원·안호영·고용진·오영훈 의원 발의)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윤후덕·황주홍·권칠승·김수민·김삼화·오세정·신용현·이동섭·하태경·정인화 의원 발의)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김선동·정유섭·박명재·추경호·이은권·이종명·홍문표·정태욱·이명수·김광림·김종석 의원 발의)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이찬열·김수민·유민봉·이학재·김삼화·정병국·권은희·오신환·채이배 의원 발의)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정재호·이훈·박정·안규백·김병관·권칠승·박홍근·우원식·인재근·박광온·안민석·유은혜·이수혁·심재권 의원 발의)

2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김철민·고용진·장정숙·백혜련·진선미·김성수·신창현·김영호·박범계·원혜영·이수혁 의원 발의)

29. 거래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윤관석·변재일·신창현·송갑석·우상호·안호영·강훈식·권칠승·박병석·김경협 의원 발의)

3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이인영·송갑석·서형수·기동민·원혜영·신창현·송옥주·전현희·노용래 의원 발의)

31. 제3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 지지 결의안(박선숙·윤영일·권칠승·장정숙·김현권·박지원·박용진·최경환(평)·심상정·인재근·김광수 의원 발의)

(15시44분)

○위원장 강석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제3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 지지 결의안까지 이상 2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화 외교부장관께서 정부에서 제출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 등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장님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미 FTA 개정 비준동의안,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 개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미 측과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

례 개정 협상을 개최하여 2018년 3월 원칙적 합의의 도출하였으며, 2018년 9월 한미 양측이 개정 의정서에 정식 서명하였습니다.

이 비준동의안은 한미 FTA 개정에 관한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한미 양국 정부 간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화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확대·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건의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 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레바논과 중동지역의 안정화 그리고 남수단 공화국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과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기간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동명부대와 한빛부대는 모범적인 임무 수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왔으며, 이에 유엔, 레바논 및 남수단 정부는 우리 국군부대의 지속적인 파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부대의 파견이 연장될 경우 국제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우리의 위상 제고와 영향력 확대뿐만 아니라 레바논과 남수단과의 양자관계 발전 기반 강화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남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남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등의 보상 업무가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관련 업무가 통일부로 이관된 상황을 감안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2017년 5월부터 추진 중인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호 결정 제외 요건을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한 경우’에서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한 경우’로 완화하고,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 보호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을 더욱 장려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북한이탈주민이 취업보호대상자인지 여부, 즉 최초로 취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생산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임시보호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 등을 개정법률안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 사유를 감안하여 이번 상정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금태섭 의원님 오셨습니까?

금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의원 존경하는 강석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었고 현재 61명의 사형수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1년째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있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지만 아직까지 실정법상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1989년 유엔은 궁극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목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의무와 사형폐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 2018년 현재 85개국이 가입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연합총회는 2007년부터 매 2년마다 사형집행 유예 도입을 요구하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 찬성 국가는 2007년 104개국에서 2016년 117개국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6차례에 걸친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습니다.

사형제 폐지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임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사형제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아무쪼록 결의안이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호 금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소관 요약 검토보고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김병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ODA에 관해서는 북한과의 거래를 국가 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북한도 국가로서 현행 법률에 따른 ODA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규정상 대북 ODA 지원 시 개별사업별로 통일부장관의 사업 승인뿐만 아니라 사업인력의 방북, 북한 주민의 접촉, 물품의 반출·반입 등 사실상 개별사업 추진 전 과정에 걸쳐 통일부장관의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제적 기준에 따른 ODA 사업 수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이석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일기와 같은 제국주의 전쟁범죄 상징물을 게양·표시한 외국선박에 대해 우리나라 영해 통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국주의 전쟁범죄 피해당사국으로서의 국민감정, 나치독일의 상징물을 금지하고 있는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다만 유엔 해양법협약의 규정상 연안국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공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명시적 법령 제정·공포에 따른 외교적 분쟁 발생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지난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미국 측의 한국산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기간 추가 20년 연장,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절차상 투명성 증진 요소 신설, 남소 제한 등 ISDS 개선 요소 신설 등입니다.

먼저 미국 측의 한국산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기간의 추가 20년 연장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여 별도의 국내산업 보완대책이 필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향후 20년간 미국 자동차시장 트렌드에 대응하여 한국산 픽업트럭 등을 수출할 수 없게 됨으로써 국내 자

동차 제작사의 미국 전체 자동차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쪽입니다.

다음, 무역구제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 무역구제조항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반덤핑·상계관세 분야에서 절차상 투명성 증진 원칙에 합당한 점과 현지 실사 절차를 개선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음, 투자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ISDS 남소 제한,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등 개선 요소가 반영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국가 공공정책의 독립성 훼손 우려 등이 있는 ISDS 제도를 이번 개정 협상 시 폐지했어야 한다는 비판적 견해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범위 상한이 제작사당 2만 5000대에서 5만 대로 확대된 것과 관련하여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점유율이 높지 않고 그 증가폭이 크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우리 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5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은 2007년 7월 19일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동명부대 및 2013년 4월 3일 유엔 남수단 임무단으로 파견된 한빛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건의 파견연장 동의안과 관련하여 파견부대의 안전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현재 시점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확인되지 않고 파견지역 현지 주민 및 각 파견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지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파견연장을 통해 국제연합 내 우리나라의 발언권과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견연장 동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파견연장 동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정부는 국회의 금번 동명부대 및 한빛부대 파견연장 동의 시에도 국익 차원에서 파견종료 기준과 시점에 대한 정책적 검토

와 파견경비 보전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6쪽입니다.

권칠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금태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촉구 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올해 12월 유엔 총회에 상정될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1년째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있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동 의정서 가입을 통해 사형집행 중지를 공식화하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동 의정서 가입을 위해서는 사형제도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에 따른 입법 정책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천정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은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기본 원칙으로, 첫 번째 작전지원비 항목 신설 불가, 두 번째 군사건설 분야 현물지원 원칙 강화, 셋째 협정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단축, 넷째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발생 기회비용의 방위비분담금 총액 기여분에 반영, 다섯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처우개선을 결의하는 것 등입니다.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작전지원비 항목 신설 요구가 확인되었고 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 등 핵심의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현재까지 협상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동 결의안은 국회 차원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긍정하고 호혜적인 합의를 위해 지켜야 할 협상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상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 11항부터 제31항까지 통일부 소관 안전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입니다.

통일부 소관 법률안 및 결의안에 관해 요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동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인 남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통일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의 임명·위촉권자도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남북피해자에 대한 보상 업무 등이 대부분 종료된 상황으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정비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가 통일부 소속으로 변경되면 위상이 낮아져 남북자 및 남북피해자에 대한 범정부적인 관심 부족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소속 이관과 상관없이 남북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남북자 가족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통일부 국정감사 시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통일부 소속으로 변경하면 위원회 위상 격하로 전후남북자에 대한 관심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정현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품 등의 살포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살포행위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살포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북전단 등의 살포행위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행법하에서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다는 측면에

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물품 등의 살포행위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목적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살포행위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살포행위를 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헌법상 기본권 간의 충돌 문제, 개정안의 취지와 교류협력의 촉진이라는 현행법의 목적과의 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이 행하는 임시보호와 보호 결정에 필요한 조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둘째 보호신청자의 신청기간을 국내 입국 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거주 또는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난 사유로 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상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을 임시보호센터에 수용하여 보호 여부 결정을 조사함에 있어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임시보호조치의 내용이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임시보호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호신청기간의 연장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로 체류하는 기간을 더 늘어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탈북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과 이미 국내에 정착하여 주거를 마련한 북한이탈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 몇 분 안 계시는데 순서대로 하지요.

김재경 위원님.

○**김재경 위원** 조 장관님.

지금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강석호** 하세요, 하십시오.

○**김재경 위원** 지난번에 판문점선언 그다음에 합의서 이런 것 비준 때문에 우리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합의서는 어쨌든 정부에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비준된 거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런데 최근에 정리된 자료들 중에서 보면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과 관련된 예산안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2018년도에 남북공동유해발굴에 13억 그다음 JSA 비무장화에 25억 8000, GP 시범철수에 한 2억 이렇게 한 40억 정도가 관련된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 보면 지금 정부안으로 넘어온 게 공동유해발굴에 8억, 한 9억 되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GP 시범철수 이게 한 82억 그다음에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에 한 20억 이렇게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는데 이게 지금 정부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한 시기보다 9·19 합의가 늦게 됐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제출된 예산안에는 일단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과정이나 국방위 쪽에서 예산안을, 그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을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렇다면 이게 논리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올해 이미 집행된 것도 있고 내년에 정부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이런 예산들을 합치면 150억 이상이,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이 분명한데 이것은 왜 동의를 안 받고 비준이 된 거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희가 파악한 금액으로는

150억이 넘지 않는, 그 정도 범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금액이 문제겠습니까, 지금?

○**통일부장관 조명균** 금액은 일단 중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해서 나름대로 법제처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법제처 기준이 그게 얼마라는 거예요? 금액에 한도가 있는 건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딱 금액으로만 보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법제처 입장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어쨌든 일정한 금액 기준을 갖고 하고 있고 일단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에 들어가는 금액은, 재정적 부담은 그 범위 이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런데 150억이 물론 우리가 470조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금액적으로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150억이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결코 적은 금액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늘상 이야기를 했지만 이 중에 안보하고 굉장히 직결돼 있는 GP 시범철수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되는 예산이 중요하지 않아요? 재정적인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그냥 정부가 비준을 해도 된다 이 논리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나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일단 정부가 이번에 새로 만든 기준이 아니라 그동안 정부에서 계속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관련해서 판단하는 기준의 기준을 가지고 법제처나 관련 부처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정부 안에서 어쨌든 이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고 검토를 했다 그것은 분명한 거네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좀 더 세밀한 걸 제가 한번 물어 봐야 되겠구나.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다음은 정양석 위원님 하시고.

○**정양석 위원**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양석 위원** 국군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 주로 외교부에서 상대국과 혹은 우리 정부 단독으로 비준동의안을 받는 경우에 자꾸 국내 비준절

차에 대한 외교부의 준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나 하면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나면 숙려기간이 있는데 늘 외교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기간을 잘 못 지켜요. 그리고 간사들께 합의해 달라 이렇게 해서 늘 시간들을 촉박하게 해 오는데 이번 건도 그렇지만 이 경우가 자꾸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관련 국장도 외국에 근무하다 또 들어와서 이 업무를 맡게 되면 국회에 관한 업무에 익숙지 않아 가지고 이런 조항들, 이런 절차들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래도 국회 담당, 기조실장이나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지시켜서 늘 예외로 가는 일이 자꾸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이런 예외하고 여야 간사 간에 동의해 주는 일이 좀 빈번하게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나중에 외교부 간부들과 자리할 때, 작은 문제지만 이것도 국내 비준절차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양석 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벌써 7월 달 혹은 4월 달에 과건이 시작되었고 이것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입법절차들을 좀, 의회 스케줄을 봐 가면서 고려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좀 꼭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지적하신 점 잘 유념해서 내년부터는 그 숙려기간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외교부로서는 만기 60일 전까지 제출을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10월 31일 이전이라는 하나의 테드라인이 있고 또 성과평가단이 갔다가 평가를 하고 오고 그다음에 관계부처 대책회의 등이 진행이 되고요. 또 그걸 다 거쳐서 아마 저희로서는 10월 24일 날 제출한 걸로 지금 제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숙려기간을 그 규정만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 위원 통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박병석 위원 지난달 24일 유엔 대북제재위원

회가 46만 달러 규모의 유니세프 지원물품 반입 허가를 한 사실이 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우리 정부도 작년 9월에 교추협에서 8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기구를 통해서 북한의 모자보건사업, 영양 지원에 사용한다는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언제 집행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국제기구 관련국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늦어져서 정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유엔이 유니세프를 통한 대북 지원 일부 해제를 결의했는데 한국 정부도 똑같이 유니세프를 통해서 북한의 모자보건사업, 영양이라든가 아니면 결핵이나 말라리아 같은 의약품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것 비슷한 성격인데 왜 한국 정부는 허가를 못 받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금 유엔 제재위하고 사실 저희가 800만 불을 유니세프하고 WFP에 기여하는 것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기여를 한 다음에 유니세프나 WFP가 실제 물품을 구매해서 북한에 보낼 때 거기에 해당되는데 필요하다면 유엔 제재위를 거치게 되는데요. 아직 저희는 그 앞 단계, 유니세프와 WFP에 기여하는 그런 것을 관계국과 또 국제기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박병석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인도적 사업이고 북한에 어떤 경제지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1년 이상 차단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보나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한미 간에 민간용 고철연료 우주발사체에 대한 제한 해제, 즉 다시 말해서 한미 미사일지침 가이드라인 개정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작년에 11월 7일 날 탄두

중량 제한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체에 합의를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민간분야 우주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박병석 위원 작년엔 미사일 지침 중에는 중량이 있는데 그 탄도중량에 관해서는 완전히 해제를 했어요. 거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한이 있고, 그런데 현재의 액체연료를 고체연료로 바꾸면 무게가 가벼워지고 그리고 소형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효용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액체연료를 고체연료로 바꾸겠다는 것을 협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나라들, 심지어는 일본이나 인도나 다른 나라들이 모두 고체연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에 신뢰가 있다면 한국의 고체연료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장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다른 나라의 경우가 좀 다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나라와의 경우를 잘 감안해서 한미 간의 이 협의가 건설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무 부처로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것이 민간용이지 군사용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미 동맹의 신뢰에 기초해서 민간용으로만 쓰지 군사용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미국이 진정한 한미 동맹에 신뢰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해서 전환하는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런 동맹의 정신에 입각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공개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병석 위원 우리 민간용의 우주발사체를 위해서라도 액체를 고체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꼭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를 촉구합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잘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석 위원님 그다음에 이정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정진석 의원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진석 의원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정진석 의원 이것 관련 예산 비목이 뭘니까, 어떤 것 들어가 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일단 신남방 정책의 범정부간 조정 기능은 대통령실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와대 경제보좌관께서 주재를 하시는 협의체고요.

○정진석 의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신남방 정책과 관련된 예산비목이 어떤 걸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 기구를 운용하기 위한 예산은 아마 행사부에서 소관이 돼 있고요. 외교부로서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관에……

○정진석 의원 아세안 관련 국가들 예산이 조금 썩은 늘었어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리고 또 하나 큰 것은……

○정진석 의원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그 규모도 좀 확대한다는 얘기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정진석 의원 그런데 신남방 정책을 발표했는데 언뜻 청사진이 머리에 확 안 들어와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세안 6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들 국가와의 일반여권 사증면제 추진 필요성과 구체적인 시행방안 검토를 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진석 의원 그런데 이게 결국 무사증 국가를 확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들 국가들과는 사증이 필요했는데 사증면제 국가로 확대할 경우에 좀 걱정이, 가뜩이나 지금 사증면제 국가와는 불법체류자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 볼까요? 2013년에 불법체류자는 16.9%가 늘어났는데 사증면제자는 2013년부터 5년 사이에 538.4%가 폭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증면제자의 불법체류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사증면제 국가를 확대하자는 것이 과연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신남방 정책이 무사증 국가를 확대하는 것만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기본에서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법

무부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직 연구용역이 결론이 안 나온 상황에서 법무부가,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진석 의원** 그러나 어쨌든 이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 6개국을 대상으로 우선 한다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들 국가와의 사증면제 추진이라는 것이 기본방침 아니겠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진석 의원** 그렇다면 법무부는 당연히 반대를 할 텐데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님 지적, 많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잘 유념하겠습니다만……

○**정진석 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오늘 뉴스 보니까 북한인권결의안, 유엔 인권결의안이 오늘 상정됐어요. 소식 들으셨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진석 의원** 그래서 이 결의안이 오늘 상정이 되면 향후 유엔 일정이라는 게 결국 회람하고 또 담당 위원회인 유엔 제3위원회에서 15일~20일 사이에 초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통과된 결의안은 유엔총회로 보내지게 되어서 한 12월 중순께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되겠지요.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정진석 의원** 그래서 2005년 이후에 연속적으로 열네 번째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 이걸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어떤 역할을 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는 2008년 이후 계속 공동제안국으로서 그 문안 협상에……

○**정진석 의원** 아니, 이번에는 EU와 일본이 주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후 기본 초안은 EU와 일본이 만들어 내고요, 그 초안을 기본으로 관심국 간에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협의에 적극 참여를 했고 지금은 그 문안이 완성되어서 공동제안국 명단과 함께 제3위원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 그래서 아까 통일부 예산심의 때도 대북인권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만 지금 워싱턴 정계가 어쨌든 민주당이 하원을, 위원장을 장악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따라

서, 사실 민주당은 통상적으로 대북인권 문제를 우선적인 어젠다로 제시해 오던 정당이거든요. 향후에 사실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문제 제기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결코 기피국가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대북인권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보니까 마치 국제사회에 ‘너네들은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피하는 거냐’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서두르고 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런 인권기구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갖춰야 되겠다는 논의가 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입장에서 이런 달라진 국제환경, 미국을 비롯한 국제환경, 지난번 ASEM 회의에서도…… 우리 대통령도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대북인권 문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듯이 우리는 소극적으로 하고 자꾸 피하는 모양새지만 국제사회에서의 대북인권 문제는 굉장히 프라이머리티가 높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님 지적하신 점 잘 유념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기피국이라는 그런 인식을 국제사회에서 받고 있다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정진석 의원**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질의에 앞서 한 1분간만 신상발언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앞전 회의 때 제가 통일부장관님께 좀 착각을 한 게 있어서, 그 전에는 바르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앞전 내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 이것을 잠시 착각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잘못된 것에 사과를 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천정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분에 대해

서 동의합니다. 체결·비준절차에 관한 기본법안 중에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공청회도 거치고 국회에다 제출해야 되고 갈등영향분석서를 제출해야 된다, 거기다 아울러서 우리 헌법 60조에 나와 있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등에 대해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 외에도 ‘안전보장’이라는 그러한 요건을, 사항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그리고 국회에 비준동의를 받을 때도, 그리고 안보영향분석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견을 일단은 제시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1월 15일쯤 채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에 북한에 갔다 와서 숨진 워비어에 대한 재판이 12월 19일 날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께서 우리나라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금으로서는 결의안 채택 과정이 컨센서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래 왔듯이, 그래서 컨센서스 채택……

○**이정현 위원** 하여튼 찬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지난번에 공동제안국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찬성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좀 묻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이정현 위원** 이게 5년마다 바꾸게 돼 있는데 2017년으로 해서 두 번째 텀이 끝났고 사실은 금년에 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 3월 달에 개정을 했지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난 뒤에 공포를 하고 나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9월 13일쯤 돼요. 그런데 오늘이 지금 11월 12일이거든요. 그러면 한참 지났습니다. 저는 통일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원래 개

정안대로 하자면 9월 13일부터 발효가 됐으니까 정기국회 전에 제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는 제출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그 법대로 하자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변경 사항이 있게 되면 30일 전에, 그리고 만약에 예산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게 된다면 국회 동의를 받으려면 국무회의 심의 후 45일 이내에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금년 안에는 국회에서 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받아볼 수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희도 지금 그 시기를 맞추는 것을 관련부처와 굉장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향후 남북관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계획을 반영하는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마무리 짓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또 상대가 북한이고 그래서 자유스럽게 그렇게 토의나 토론을 할 수도 없고 또 일정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 백번 천번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두 번이나, 이 법이 통과된 2005년, 법이 통과되고 2008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두 번이나 텀이 지나갔고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법대로 정부는 금년치는 앞선 것을 발표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사항이 있을 때 밟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통일부가 이것과 관련된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에 대한 국회 동의를 요청을 하면서 정작 통일부가 국회에다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청구사항, 의무사항을 지금 전혀 이행도 하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나 이런 부분도 없거든요.

지금 그것에 의한다 그런다면 사실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계획도 보고를 해야 되고 그 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각 부처 정부 심의도 거쳐야 되고 국무회의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언론에 게재도 해야 되고 또 실적도 체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 저는 오늘 들여다보기 전까지도 이런 게 있는 지조차도 잘 모를 정도였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지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 조명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라든가 평양공동선언, 판문점선언 이행 계획과 맞물려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로서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금년 안에 나오기는 나오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일단 목표는 그렇게 하고 가급적 빨리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니, 남북관계가 이렇게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발전 기본계획도 없이 발전만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도도 없이, 해도도 없이 어떻게 항해를 한단 말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고 국민들 하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고 아주 중요한 책무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알다시피 발전법에 들어가야 될 그러한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한반도의 평화 증진 문제라든가 경제공동체 구현 문제라든가 동질성 회복의 문제라든가 인도적 문제,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 국제사회 협력 증진 문제, 제도상의 책무 문제를 포함한 굉장히 많은 중대한 내용들이 이 계획서에 담겨야 되고 그것들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태하에서 발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협력기금을 이 발전에 맞춰서 예산을 갖다 쓰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류와 협력에 쓰일 예산의 규모와 그 시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발전에 대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정상 회담을 포함한 거기서 합의된 그러한 철도라든가 또는 도로의 현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면 남북협력기금에서 그 돈을 갖다 일단 착공을 하

고 나중에 많이 들어갈 때가 된다 그러면 별도의 그것을 하겠다, 정말 체계가 없어 보여요.

사실은 추경예산만 갖고도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협력기금에서 우선 착공비는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그때 보자, 그런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추계를 해라’, ‘그것은 모르겠다. 아직 북한과 관계 때문에 그것은 제시할 수도 없고 돈 마련된 것이 솔직히 없다’…… 그런데 그것은 마련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전제와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우선 비핵화가 돼야만 아까처럼 철도가 됐든 도로 현대화가 됐든 뭔가 진행을 해야 추계가 나올 텐데 비핵화도 안 됐습니다. 비핵화만 돼 가지고 되냐? 비핵화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것이냐 해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전제가 돼야만 그다음부터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를 알고,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SOC 문제기 때문에 가서 굉장히 더 많은 조사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한 발자국도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의 동의부터 요구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조차도, 또 의무사항으로 책무로 국회에다 제출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혁 위원님 그다음에 이인영 위원님 그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수혁 위원** 남북관계 발전법에 안전보장도 하나 집어넣자…… 헌법 60조의 국가 간의 조약에 국회 동의를 필요한 조약 7개 중에 들어가 있는, 두 개만 남북관계 발전법에 인용을 해서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외교부장관께서는 헌법 60조의 안전보장이 무슨 뜻인지, 저는 볼 때 상호 또는 집단 안전보장입니다.

안전보장은 어느 나라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침략을 받을 경우에 다른 나라가 원조도 해 주고 그런 책임을, 안전보장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지 양 당사자 간에 내가 침략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것, 침략은 유엔 헌장에 금지돼 있잖아요. 여기서 안전보장은 불가침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단지……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하셨듯이 상호……

○**이수혁 위원** 그것 지금 답변하실 것 없이 저하고 이정현 위원님께 잘 정리해서 안전보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의견서를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알겠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런데 다만 남북한 간에 지금 합의된 것은 군사 분야에 대한 합의라고 돼 있는데 그때 군사 분야 합의는 노플라이존(No-fly Zone), 비행기가, 그것은 교전국 간에 많이 하고 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성질의 것이지 안전보장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중대한 군사 분야 그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해도 좋은데 남북관계 발전법을 개정할 때에는 중대한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다른 것 하나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사업 문제가 우리 예산에 다, 통일부와 외교부가 있는데 오늘 통일부의 보고 중에 독일통일 문제는 올해 다 끝나기 때문에 독일통일 문제는 더 이상 연구사업으로 삼지 않는데 EU 통합, 정치통합·경제통합 과정을 지금부터 검토를 하겠다……

좋아요. 통일부가 그것 하는 것은 좋은데, 저도 브뤼셀에 EU 담당 참사관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3년 내내 EU 통합과정 보고서 쓰고 각종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외교부에 그게 수십 년 축적된 지식과 연구보고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연구기관에 의뢰한 보고서도 있을 테고. 이제서 EU 전문가도 없는 통일부가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외교부가 한 것은 어디다가 쓰려고 하느냐 하고 제가 아까 질문했거든요, 예산소위에서.

그러니까 외교부가 줄 수 있는, 통일 관계에 참고할 수 있는 것은 통일부에도 주고 해서, 그래서 부대의견에 유사·중복을 방지하라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양 부처에 각각 줬는데 그것 협조해 줄 수 있는 것은 협조하고 통일부는 외교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나 연구한 그런 것들을 실적을 요청하고 또 제공을 하고 해서, 했던 일 다른 부처에서 세·자비로 이제서 EU를 연구한다는 것은 난센스 같아요. EU가 지금 얼마나 오래된 조직입니

까, 50년대에 만들어진 조직인데. 그동안에 외교부는 축적돼 왔거든요. 그것을 자료를 받으시고, 세·자비로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통일부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부분은, 외교부나 연구단체에서 EU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죽 해 왔어요, 그 분야로 박사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면 되지 세·자비로, 거기에 또 EU 전문가를 하나 키워야 될 것 아니에요. 한두 사람을 키우든지 외교부에서 파견을 받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차관님 오셨으니까 한미 FTA 개정협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연구원하고 대외경제연구원 평가보고에 따르면 자동차 분야에서는 조금 내주었지만 큰 영향이 없다, 그다음에 투자자 제소 조항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 개선이 있고 국내 정책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무역규제와 관련해서는 투명성, 절차에 있어서의 개선 부분들이 있다 대체로 이런 평가인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번의 한미 FTA 개정협상 자체가 워낙 제한된 범위의 협상이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정도의 분야에서 미 측과 한국 측의 관심사항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피해자 숫자나, 그게 산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피해 규모, 영향 규모 이런 액수에 있어 가지고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해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새롭게 개방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분야는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피해 분야라든지 피해 산업이 따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공급 부족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기준에서 예외 인정 이런 것들도 시작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것은 섬유하고 의류 쪽의 원산지 규정 속에서 저희가 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그런 품목들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인데, 그게 지금까지의 협정 내용에 따르면 보통한 1년 2개월에서 6년 가까이 원산지 규정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 간에 합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서 1년 내에 원산지 규정이 완료되도록 하겠다라는 미측의 약속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인영 위원 지금 북미 간의 핵 문제를 둘러싼 협정이 아직 진척되지 않아서 소강상태에 있고 완전히 타결되지 않아서 빠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발전될 때 그런 개성공단의 원산지 예외 규정 이런 것들은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위원회 구성을 이미 해서 각종 FTA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한반도의 비핵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되면 당연히 그 조항을 활용해서 저희가 역내……

○이인영 위원 우리 측이 요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인정을 받도록 저희가 협의할……

○이인영 위원 저도 그 정도는 사전조사를 했는데요. 품목리스트 방식이 있고 역외가공지역위원회 방식이 있는데 한미 FTA는 역외가공지역위원회 방식으로 가고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통해서 개성공단과 남북협력 현황 그리고 협정사항, 위임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는 받았는데요.

그러면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이 위원회가 가동되고 개성공단의 역외지역, 그러니까 원산지 예외 규정 이런 것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 위원회는 지금도 가동을 하고 있고요.

○이인영 위원 원래 열려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남북관계가 발전되면서 경험이 복원되고 더 확장되고 이런 과정이 되면, 지금은 그 규모가 크지 않아서 무역 거래 과정에서 특혜 대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경험이 확장되면 최혜국 대우라든가 보조금 협정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GATT나 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위원님, 남북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인영 위원 예, 남북관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대로 한반도의 비핵화라든지 제재 완화 같은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남북 경제협력이라든지 무역거래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그런 제도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중국이 홍콩과 대만과 맺었던 CEPA 그런 방식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도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통일부장관님도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북한 간에 과거에 청산결제방식의 합의를 채택할 때라든가 경제 분야 합의를 채택할 때 늘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합의서 내용에도 그런 것을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동서독 경우에도 동서독 간에 그런 계약을 맺을 때 그런……

○이인영 위원 동서독은 기본협정이 돼 있는 상태 속에서 했기 때문에……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계속 축적해 나가면서 나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것처럼 국제기구에서 문제가 제기될 때 남북한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남북한 간에 경제 동반자협정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북측과 논의해 나가자 하는 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전에 보니까 중국하고 대만 간에는 양자 간에 26개인가 그런 경제협정들이 구체적으로 체결돼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핵 문제가 북미 간에 완전히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남북관계가 특히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발전할 수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경제협력과 관련 법·제도적인 정비 이런 것들은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CEPA뿐만 아니라 FTA와 관련해서도 준비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미리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추미애 위원** (손을 들)

○**위원장 강석호** 추미애 위원님.

○**추미애 위원** 천정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정법인 남북합의서 체결·비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 법은 기본계획을 정부가 수립하고 이 법안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화통일에 대한 책무는 대통령한테 주어지고, 또 대부분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또 대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남북관계에 기인하는 불가예측성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헌법상 대통령의 전일적인 책무로 규정한 것은 하나의 통치행위적 성격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법적 재단의 대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체제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통상조약 체결과는 함께 볼 수 없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따로 이것이 통상조약처럼 공개적으로 남북합의서 체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자칫 이런 것들 기본계획이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입구에 들어서서 이른바 유엔 제재도 해결이 되고 또 미국의 대북제재도 해결이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갔을 때 예측성도 보이고, 안정적인 입구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입법 제안자의 취지처럼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법적 안정성,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 이런 제정법안과 같은 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단계에서

선불리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안 그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너무 빨라서 문제라는 오해를 산다는 지적도 이미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 단계에서 그러한 불가예측성, 대내적인 특수성, 대외적인 민감성 이런 것 볼 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외에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제정법을 현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일부장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정배 의원님께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 제정안을 제출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참여하고 함께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천정배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이해하면서 검토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든가 불예측성이라든가 실제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저희가 다른 입법례를 보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합의서 체결·비준에 관한 어떤 기준 원칙을 정하고 사전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관계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이 발생할 해서 많은 또 다른 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항과 관련해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국민참여라든가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든가 지속성 이런 측면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입법상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호** 다 마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질의를……

○**이정현 위원** (손을 들)

○**위원장 강석호** 잠깐만요, 저도 하나 하고 하세요. 제가 하나만 짧게……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 한미 FTA 재협상을 하셨는데 이제 다 끝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아니, 국회의 비준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다 끝났는데.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고율관세 적용대상에서 한국이 면제를 이번엔 어떻게 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아직 232조 보고서 자체가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어느 시점에 나올지에 대해서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석호**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도 아직 결론 난 것은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아직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예.

○**위원장 강석호**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중간선거 이후에 더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채택을 하고 또 현재 보호무역 기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본다면 향후에 우리 손해 보는 품목이 철강하고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아닙니다. 위원님, 철강 분야는 저희가 쿼터에 대한 협상을 완료해서……

○**위원장 강석호** 완료를 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 미국하고는 그 부분에서 결론을 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문제가 남아 있긴 한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 미 측의 자동차 분야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불식을 시켰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스스로도 한미 FTA 개정 협상 자체가 매우 잘된 협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의 비준 발효를 계기로 자동차, 232조에서도 한국은 면제대상이 되는 쪽으로 최대한 저희 정부에서는 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런 관점에서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석호**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통일부는 아까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되고 제출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평가단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협력기금 평가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취지가 어쨌든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과 국민적인 합의를 중시 여기자 하는 것이 법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께서는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금 현재 남북협력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회에서 나중에 결산 심사를 하고 있고……

○**이정현 위원** 그런데 잘 알다시피 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자료를 안 주시잖아요. 운영 규정 때문에, 통일부 내부의 운영 규정, 운영 시행령도 아니고 내부 자체 운영 규정, 예외조항 때문에 자료도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공개를 못 하고 무서워서 그렇게 겁나고 벌벌 떨 일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자체적으로 협력기금 평가단이라도 구성을 해 갖고 거기서라도 말하자면 투명하게 뭔가를 검증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특수활동비입니까? 통치자금입니까, 아니면 개인 철학에 따라서 운용되는 돈입니까? 국민세금이요 그 돈이 국내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우려와 염려를 하고 국민들이 알 수도 없는 북한에 가서 쓰여진 돈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획서도 제출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공개를 하라고 하니까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협력기금 평가단도 구성하지도 않고, 그러면 도대체 통일부에서 쓰는,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이런 북한에 쓰여진 돈들은 누가 보는 겁니까? 누가 이것을 말하자면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까? 국민들은 지금 우리한테 권한을 위임해 줬습니다, 바로 이런 것 심사하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할 수도 없고 자체적으로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한 것을 받아 볼 수도 없고 계획서도 받아 볼 수도 없고……

통일부는 이런 부처입니까? 국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는 곳입니까? 저는 정말 이것은 앞으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적으로 잘하고 계신 부분에 국민적인 진짜

합의를 받아 내려고 한다면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예산에 대해서 헌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률과 규정과 규칙과 시행령까지 전체가 다 투명하게 하라,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을 다 규정하고 있다면 최소한 그것은 지키고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것 하나도 안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어쨌든 말씀 주신 취지는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도 더 고민하고 또 가능한 한 그런 방안들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니, 다른 예산 말고 남북관계 예산은 솔직히 말해서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쓰이고 좋게 쓰임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이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국회의원들, 적어도 같은 국회의원 중에서도 정보 위원들한테는 전부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외통 위원들한테는 같은 국회의원들인데, 저희들이라고 사인하라면, 공개하지 말라고 가서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인을 안 하겠습니까? 같은 국회의원들인데도 정보 위원들한테는 공개를 하고 저희 외통 위원들한테는 기본적인 것조차도 공개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고 그러고 좋은 말은 다 써서 국회의 동의를 받네 어쩌네, 보고를 하네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말해서 마중물이라는 말 쓰고 있지요? 지금 북한의 철도나 도로 현대화를 위해서 마중물, 그 마중물을 아까 협력기금에서 갖다 씁니다. 도대체 저는 예산에서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중물을 갖고 갔다…… 국가 예산을 마중물이라고 쓰는 그런 돈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는 것을 어느 정도 제대로 투명한가 보고 ‘이것은 너무 잘 썼네요, 앞으로 더 지원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이런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것 수정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저희들이 뭔가 권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멀리 바라만 보고 있고 어떻게 쓰여진지도 모르고 있고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실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따져볼 수도 없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결국 국민들의 불신을 쌓이게 해 가지고 정말 필요로 할 때 국민

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 말고도 앞에 다른 것도 지적을 했지만 한 번 정도는 장관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모든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급변하는 상황이 생기고 하니 내부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점검해서 이제 국민들 수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실천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치면 고치는 것이고 아니면 이행해야 될 것은 이행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더 저희 나름대로 가능한 방안,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안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이정현 위원님 잘 유념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경화 장관, 조명균 장관, 황인성 처장, 정승일 차관을 비롯한 각 산하기관장 여러분, 위원회 공무원, 보좌관 등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정부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 위원(20인)**

강 석 호	김 무 성	김 재 경	박 병 석
박 주 선	송 영 길	심 재 권	원 유 철
원 해 영	유 기 준	윤 상 현	이 수 혁
이 인 영	이 정 현	정 병 국	정 양 석
정 진 석	진 영	천 정 배	추 미 애

○**청가 위원(1인)**

이 석 현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금 태 섭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전문위원 유상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관 강경화
제1차관 조태호
제2차관 이태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윤순구
차관보 박유상
공공외교대사기획조정실장 의전장
의전장 다자외교조정관 강정식
경제외교조정관 윤장현
기후변화대사재외동포영사실장 유연철
국제안보대사부대변인 이진건
외교전략기획관 김득환
감사관 마상완
조정기획관 태준열
인사기획관 구필우
의전기획관 이재완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우식영
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은영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조영기
북미국장 정기홍
중남미국장 홍진욱
유럽국장 임상범
아프리카중동국장 권기환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배중인
국제법률국장 홍석인
국제경제국장 강재권
양자경제외교국장 김희상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권세중
북핵외교기획단장 정연두

국립외교원

원장 조세영
외교안보연구소장 김인철
기획부장 박중석
교수부장 서상표

통일부

장관 조명균
기획조정실장 이덕행
통일정책실장 김남중
정세분석국장 정승훈
교류협력국장 이주태
인도협력국장 김병대
남북협력지구개발발전기획단장 최영준
남북회담본부장 김의도
통일교육원장 김백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장 임병철
남북출입사무소장 이서강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서두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황인성
사무처장 김안나
기획조정관 김점준
통일정책자문국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송진호
사회적가치경영본부장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기획협력이사 강영필
교류협력이사 김성인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최연호
상근이사 김연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고경빈
사무총장 한기수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